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
|--------|---------|
| 선 람 | 기 관 의 장 |
| | |

제817호 2023. 1. 19.(목)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3-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 고시----- 1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3-69호 사천시 방재성능목표 공표----- 2
- 사천시 공고 제2023-81호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
- 사천시 공고 제2023-85호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
- 사천시 공고 제2023-91호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1
- 사천시 공고 제2023-97호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2

| | | | | | | | | | | |
|--------|--|--|--|--|--|--|--|--|--|--|
| 회 람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817호

사천시 고시 제2023-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 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 1. 19.

사 천 시 장

| 신 고 인 | | 점용·사용 승인사항 | | | | 실시계획 신고 수리사항 | | 공사완료 신고수리 |
|-------------------|------------------|-------------------------|----------------------------|----------------------------|---------------------------|-------------------------|------------------|--------------|
| 주 소 | 성 명 | 승인번호 (연월일) | 승인기간 | 위 치 | 면적(㎡) | 신고번호 (신고일자) | 공사내역 | |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사천시장 (도시재생과장) | 2022-20 (2022.9.29.) | 2022.9.28.~ 2036.12.31. |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17-37번지선 | 1,029 (직접595 간접434) | 2022-22 (2022.12.8.) | 파도막이 및 부잔교 설치 | 2023.01.12. |

사 천 시 공 보

제817호

사천시 공고 제2023-69호

사천시 방재성능목표 공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라 「사천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월 19일

사 천 시 장

1. 목 적 : 사천시 관내 재해 예방을 위한 방재정책 추진 시 활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함
2. 근 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
3. 방재성능목표

| 지역명 | 강우지속시간 | | |
|-----|--------|-------|-------|
| | 1시간 | 2시간 | 3시간 |
| 사천시 | 85mm | 125mm | 150mm |

사 천 시 공 보

제817호

4. 방재성능목표 적용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우수지
다.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 부속물 중 배수펌프장
 -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저류시설과 그 밖의 공작물·시설 중 빗물펌프장
 - 3) 「도로법」 제2조제2항에 따르 도로시설 중 배수로 및 길도랑
 -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 5)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지침」(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른 고지배수로

5. 방재성능목표 적용(운용)

- 도시지역 내에 기 설치된 방재시설에 대해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하여 홍수처리 능력 등 방재성능 평가
 - 평가 결과 기존 방재시설의 성능 부족으로 내수침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되는 지역에 대한 방재정책 수립을 위한 배수구역 내 홍수유출량 산정시 방재성능목표 적용
- 택지개발 등 새로운 도시기반 계획수립 시 설계기준에 따라 계획한 방재시설의 성능이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
 - 평가 결과 계획된 방재시설의 성능이 부족할 경우 배수체계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배수구역 내 홍수유량 산정 시 적용

6. 방재성능목표 적용일 : 공고일부터

사 천 시 공 보

제817호

사천시 공고 제2023-81호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위원과 주민자치회 출범 위원 간 임기 통일 및 주민자치위원 임기와 주민자치회 회계연도 통일을 통해 원활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제3항 신설하여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만료일을 2024. 12. 31.로 규정

사 천 시 공 보

제81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67, FAX : 831- 6021)

사 천 시 공 보

제817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817호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1.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시범실시주민자치회 위원과 주민자치회 출범 위원 간 임기 통일 및 주민자치위원 임기와 주민자치회 회계연도 통일을 통해 원활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부칙 제3조(경과조치)에 제3항 신설하여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만료일을 2024. 12. 31.로 규정

사 천 시 공 보

제817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1. . ~ 2023. 2.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17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615호 사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만료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자치회장, 부회장의 초과 재직기간은 연임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경과조치) ①·② (생략)</p> <p><u><신 설></u></p> | <p>제3조(경과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만료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자치회장, 부회 장의 초과 재직기간은 연임 횟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u></p> |

사 천 시 공 보

제817호

사천시 공고 제2023-85호

「사천시 주민투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월 1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주민투표권 확대, 주민투표 대상 확대, 전자서명 등 청구방식 및 투표절차 개선, 불합리한 규정 정비)을 반영하여, 법과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사 천 시 공 보

제817호

2. 주요내용

- 가.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안 제8조~제10조)
- 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및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안 제3조~제4조)
- 다.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안 제8조, 안 제10조)
- 라.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안 제8조)
- 마.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
- 바. 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65, FAX : 831- 6021)

사 천 시 공 보

제817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817호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1.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주민투표권 확대, 주민투표 대상 확대, 전자서명 등 청구방식 및 투표절차 개선, 불합리한 규정 정비)을 반영하여, 법과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안 제8조~제10조)

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및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안 제3조~제4조)

다.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안 제8조, 안 제10조)

라. 통·리·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안 제8조)

사 천 시 공 보

제817호

마.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

바. 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0조, 제12조, 제12조의 2, 제16조제1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1. . ~ 2023. 2.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17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시”를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사천시”로, “관계법령에 따른”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로, “사람”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중 “법 제9조제2항에 따른”을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를 각각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전단 중 “위임연월일”을 “위임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부 하여야”를 “교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17호

제7조 중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을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성별,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17호

제10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를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을 “생년월일을”로, “별도의 사본을 준비 하여”를 “사본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를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를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천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를 삭제하고,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며,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17호

제14조(심의회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중전의 제13조)제1항 중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을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조제5항에 따른”을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 내”를 “기간내”로, “한 차례”를 “1회”로 한다.

제18조(중전의 제14조)제1항 중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를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을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17호

제19조(중전의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제2항에 따른”을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따른다”를 “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8조제2항에 따른”을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따른다”를 “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중전의 제16조) 중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26조제1항 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을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17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 ----- ----- <u>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u>-----.</p> |
| <p>제2조(시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u>시 선거관리위원회</u>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u>재외국민 또는 외국인</u>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 <p>제2조(시의 책무) ① <u>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p> <p>② ----- <u>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u>-----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외국인</u>----- ----- -----.</p> |
|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u>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시에</u>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u>관계법령에</u> 따</p> |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u>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사천시</u>----- ----- ----- <u>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u> -</p> |

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 외국인-----
-----.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
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수 있
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 제>

1.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
경, 폐지, 설치, 분리, 합병, 사
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행정동·
리의 구역변경과 폐지, 설치, 분
리, 합병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
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
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다
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
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
2항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
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
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의 9분의1로 한다.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

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연월일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② -----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임기간 -----
----- . -----

----- 교부하여야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
-----.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성별,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성별,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
----- .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별도의 사본을 준비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시장은 주민투표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한다)를 둔다.

--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② ---- 생년월일을 -----

----- 사본을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④ ----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
명의 확인

2. 주민투표와 관련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
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
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
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
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이 경
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
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
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
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
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
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

1. 사천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람

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주민투표 청구권 심사 등을 위한 위촉일 또는 임명일로부터 해당 주민투표 청구권의 처리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⑥ 삭제

⑦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직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⑨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⑪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

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⑫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
다.

<신 설>

<신 설>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
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
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
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
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
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

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 1회-----

-.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26조제1항 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17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의한다.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공표방법 등) -----

-----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

<삭 제>

청 구 인 서 명 부

| 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서 명 또는 날 인 | 서명자 일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관 련 법 규

□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개정 2009. 2. 12., 2016. 5. 29., 2022. 4. 26.>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주민투표청구권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③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6.>

⑤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신설 2022. 4. 26.>

1. 전자서명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 및 제7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철회방법

⑥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구인서명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

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그 전자서명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철회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 요청,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 4. 26.>

[시행일: 2023. 4. 27.] 제10조제1항 후단, 제10조제2항 후단, 제10조제4항, 제10조제5항, 제10조제6항, 제10조제7항, 제10조제8항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①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군·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전자

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방법 및 서명에 대한 심사·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4. 26.>

[시행일: 2023. 4. 27.] 제12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2조제9항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26.]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①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사 천 시 공 보

제817호

사천시 공고 제2023-91호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여 주민생활 편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사 천 시 공 보

제817호

2. 주요내용

가.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안 제4조의2)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도시재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도시재생과)

[(우)52539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도시재생과)

전화번호: 055)831-3184, 팩스번호: 055)831-6042)]

사 천 시 공 보

제817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817호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 안 번 호 |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1. .

제 출 자: 도시재생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하여 주민생활 편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안 제4조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제2항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사 천 시 공 보

제817호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1. . ~ 2023. 2.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17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5호”를 “제3조제6호”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 천 시 공 보

제817호

1. 제6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제10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12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0조제1항 중 “· · 센터 · ·”를 ““센터””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사업총괄코디네이터 역할) 사업총괄코디네이터는 사업 전체를 기획·총괄·조정하며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련한 제반사항에 관한 총괄·조정
2. 국가정책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재생의 방향성을 제시
3.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계획 및 설계용역 등의 발주방식 및 과업지시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
4. 계획안의 수정·변경과 설계, 시공단계의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결정
5. 행정기관, 주민협의체, 사업시행주체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이를 계획 및 사업추진에 반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u>다음과 같다</u>.</p> <p>1. (생 략)</p> <p>2. “행정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해 부서 간 정책협의를 하고자 시장 직할 소속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p> <p>제4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u>제3조제5호</u>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p>1. ~ 4. (생 략)</p> <p><u><신 설></u></p> | <p>제2조(정의) ----- ----- <u>다음 각 호와</u>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 ----- -----.</p> <p>제4조(공동이용시설) ----- ----- ----- <u>제3조제6호</u>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u>제4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u></p> <p><u>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u></p> <p><u>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u></p> |

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제10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12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사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 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 · 센터 ·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16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① (생략)

제21조(사업총괄코디네이터 역할)

사업총괄코디네이터는 사업 전체를 기획·총괄·조정하며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련한 제반사항에 관한 총괄·조정

② 국가정책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재생의 방향성을 제시

③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계획 및 설계용역 등의 발주방식 및 과업지시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

④ 계획안의 수정·변경과 설계, 시공단계의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결정

⑤ 행정기관, 주민협의체, 사업시행주체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이를 계획 및 사업추진에 반영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

“센터”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현행 제1항과 같음)

제21조(사업총괄코디네이터 역할)

사업총괄코디네이터는 사업 전체를 기획·총괄·조정하며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련한 제반사항에 관한 총괄·조정

2. 국가정책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재생의 방향성을 제시

3.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계획 및 설계용역 등의 발주방식 및 과업지시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

4. 계획안의 수정·변경과 설계, 시공단계의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결정

5. 행정기관, 주민협의체, 사업시행주체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이를 계획 및 사업추진에 반영

관 련 법 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제2조 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17호

사천시 공고 제2023-97호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년 8월 지자체 네거티브 전환과제 부처협의 결과 반영.

2. 주요내용

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제1항제11호)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사 천 시 공 보

제81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미래농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미래농업과장)

(우편번호: 52538, 주소: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 전화: 831-3823,

FAX: 831-6052)

사 천 시 공 보

제817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817호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1. .
제 출 자: 미래농업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기본계획의 범위 및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기본계획 포함사항 확대(안 제6조제1항)
- 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 범위 확대(안 제7조제5항)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사 천 시 공 보

제817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1. 19. ~ 2023. 2. 8.(20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17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민”을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따른 지역 및 농가 발전 가능성에 관한 사항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그 밖에 시장이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u>시장</u>(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들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u>시민</u>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시와 농업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p> <p>제6조(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4. (생략)</p> <p><신설></p> |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u>사천시장</u>----- ----- ----- ----- ----- -----.</p> <p>② ----- <u>사천시민</u>(이하 “<u>시민</u>”이라 한다)----- ----- ----- -----.</p> <p>제6조(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①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따른 지역 및 농가 발전 가능성에</u></p> |

| | |
|--|---|
| <p>② (생략)</p> <p>제7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p> <p>① ~ ④ (생략)</p> <p><u><신설></u></p> | <p><u>관한 사항</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u>⑤ 그 밖에 시장이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u></p> |
|--|---|

관 련 법 규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농업인등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및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